

【 9 】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5. 5. 10

제 출 자 양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일을 요하는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제정(대통령령 제18739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29조).
- 나. 지방의회의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치적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30조).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시”를 “양주시”로 한다.

제2조중 “소속기관장의”를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30조4”를 “법 제30조의4”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1조중 “15일”을 “15일울”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토요휴무제)”를 “(토요일 휴무제)”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연가는 13시를 기준으로 하여”를 “연가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0.5일상”을 “0.5일이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육아시간”을 “육아 시간”으로 하고, 같은조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중 “받는”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시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근속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휴가를 허용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9조를 제29조의2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9조의2(종전 제29조)제1항중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를 “제29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로 한다.

제30조를 제30조의2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별표1 중 “선서한다.”를 “선서합니다.”로 한다.

제2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제10조제3항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으로 하고, 제12조중 “공무원증규칙”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하며, 제19조제2항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연금법」”으로 하고, 제24조제6호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으로, 같은조 제7호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5조제5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으로, 같은조 제6항제1호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제6항제2호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표창 규정」”으로, 제6항제4호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하고, 제31조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신</u>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u>소속기관장의</u>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파견근무) ①<u>법 제30조4</u>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생략)</p> <p>③국외의 정부기관, <u>타 지방자치단체</u>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u>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판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p> <p>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u>소속기관의 장은 15일</u>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u></p> <p>제1조(목적) ----<u>양주시</u>-----</p> <p>제2조(복무선서) ①-----<u>소속기관의 장</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파견근무) ①<u>법 제30조의4</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u>지방자치단체</u>-----</p> <p>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u>15일을</u>-----</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5조(특별휴가) ①~③ (생략)</p> <p>④ <u>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u>은 1일 1시간의 <u>육아시간</u>을 얻을 수 있다.</p> <p>⑤ (생략)</p> <p>⑥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상을 받는 때</p> <p>2. 정부포상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는 때</p> <p>3. 청백리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의 표창을 받는 때</p> <p>4~5. (생략)</p> <p>⑦ <u>시장은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할 때에는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휴가를 허용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일수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u></p>	<p>제25조(특별휴가)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육아 시간</u>-----</p> <p>⑤ (현행과 같음)</p> <p>----- ----- -----</p> <p>1. -----<u>받은</u>-----</p> <p>2. ----- -----<u>받은</u>-----</p> <p>3. ----- -----<u>받은</u>-----</p> <p>4~5. (현행과 같음)</p> <p>⑦ <u>시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근속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휴가를 허용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u></p>
<p>⑧~⑩ (생략)</p> <p><신설></p>	<p>⑧~⑩ (현행과 같음)</p> <p>제29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p> <p>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9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p> <p>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p> <p>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p> <p>제29조의2(겸직허가) ① -----제29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0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지방의회의원</p> <p>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p> <p>제30조의2(정치적 행위) (종전 제30조와 같음)</p>
<p>제30조(정치적 행위) (생략)</p>	
<p>[별표1]</p>	<p>[별표1]</p>
<p style="text-align: center;">선 서 문</p> <p style="text-align: center;">선 서</p> <p>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p> <p>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p> <p>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p> <p>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p> <p>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p> <p>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선 서 문</p> <p style="text-align: center;">선 서</p> <p>----- 선서합니다.</p> <p>1. -----</p> <p>1. -----</p> <p>1. -----</p> <p>1. -----</p> <p>1. -----</p>